

공 고

「주민등록법 제24조」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「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」 및 「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고대상자

연번	대상자성명	생년월일	발급기간	사유
1	윤*아	2007.01.06.	2024.02.01.~2025.01.31.	폐문부재
2	김*윤	2007.01.25.	2024.02.01.~2025.01.31.	폐문부재
3	김*빈	2007.01.24.	2024.02.01.~2025.01.31.	폐문부재
4	백*엽	2007.01.15.	2024.02.01.~2025.01.31.	폐문부재
5	마*현	2007.01.18.	2024.02.01.~2025.01.31.	폐문부재
6	우*연	2007.01.17.	2024.02.01.~2025.01.31.	폐문부재
7	이*라	2007.01.15.	2024.02.01.~2025.01.31.	폐문부재
8	고*진	2007.01.06.	2024.02.01.~2025.01.31.	폐문부재
9	지*찬	2007.01.24.	2024.02.01.~2025.01.31.	폐문부재

2. 공고기간: 2024. 1. 23.(화) ~ 2024. 02. 13.(화) 【21일】

3. 유의사항: 발급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됩니다.

4. 문의사항: 병점1동 행정복지센터 (☎031-5189-4525)

2024. 1. 23.

병점1동장

